

第36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4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10月7日(金) 午後3時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案)
2. 서울特別市城北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城北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城北區'94第3次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2面
2. 서울特別市城北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2面
3. 서울特別市城北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4面
4. 서울特別市城北區'94第3次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城北區廳長 提出) 4面

(15時02分 開議)

○議事係長 鄭恩秀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第4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國旗에 대한 敬禮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國旗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國旗에 대한 敬禮)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長 李敏衡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金文洙 財務局長님을 비롯한 課長님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月4日和 5日 양일간에 걸쳐서, 區政에 관한 質問의 時間을 가졌습니다.

이번 區政質問에 임하는, 同僚議員 여러분의 진지하고, 熱意에 찬 모습을 보고, 우리 議會의 내일은 밝고, 또한 우리 城北區의 미래는, 알차고 희망에 찬 城北으로 발전되리라고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區民生活와 밀접한 각종 懸案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6回 城北區議會 臨時會 第4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事務局長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梁石龍 事務局長 梁石龍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第36回 臨時會 休會中 各常任委員會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行政委員會에서는 지난 9月27日 第1次 會議에서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案)”등 5件의 案件을 審査하여, “서울特別市城北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의2件”은 城北區廳側이 提出한 原案대로 審査하여 本會議에 附議하기로 하였으며,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案)”은 수정 심사의결하였으며, “서울特別市城北區體育道場과인접한場所의範圍에 관한條例廢止條例(案)”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審査하였다는 報告가 있었습니다.

市民福祉委員會에서는 지난 9月26日 第1次 會議에서, “서울特別市城北區兒童委員協議會條例(案)”을 審査한 결과, 本案件과 관련된 “서울特別市兒童委員에 관한條例改正條例(案)”이 市議會에서 改正중에 있어, 市條例가 확

정된 후 審査기로 하고, 보류하였다는 報告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審査報告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敏衡 事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城北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5時08分)

○議長 李敏衡 이어서,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이 상 2件의 議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本 案件을 審査한 行政委員會 審査結果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行政委員會 柳成烈委員長님 나오셔서 議事日程 第1項부터 第2項까지의 審査結果를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委員會委員長 柳成烈 行政委員會 審査報告를 드리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行政委員會 委員長 柳成烈議員입니다.

第36回 城北區議會 臨時會 休會中 行政委員會에서 審査한 案件中 總務局所管 2件을 일괄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改正된 地方自治法 第32條2項 및 同法施行令 第15條2項에 따라 地方議會議員의 직무상 傷害등에 대한 補償金의 支給基準 및 節次를 條例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行政委員會에서는 우리 議員들의 신상에 관한 事項이므로 심도있는 質疑 答辯을 통하여 本 條例案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여 議決하였습니다.

條例 第2條 區議會 議員의 職務의 범위 내에서 地方自治法 第53條 단서 규정에 의하여 閉會中에 開會된 委員會의 職務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부 수정하여 本會

議에 附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城北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別定職7級 상당의 兒童福利指導員에 대한 정원이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조정 승인되었으나, 현재 서울特別市 城北區 地方別定職公務員 人事管理條例에는 兒童福利指導員의 任用資格 기준이 없으나, 條例에 이를 신설하여 人事管理業務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條例 改正으로서 임용자격기준이 兒童福祉法施行令 第3條1項의 기준에 벗어남이 없으므로 原案대로 本會議에 附議하기로 議決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저희 行政委員會에서 審査한대로 만장일치 原案可決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敏衡 行政委員會 柳成烈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부터 第2項까지 이 상 2件의 案件에 대하여 質疑와 討論時間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議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崔哲模議員님

(○崔哲模議員 議席에서 - 앉아서 하겠습니다. 黃鎬山議員께서 市·道議員이 아니라 區議員으로 표기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總務局長님께서 市·道議員과 區議員과의 補償金 차이가 있으므로 補償金을 높이기 위하여 市·道議員으로 규정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게되면 區議員이 市議員 補償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또 質疑하실 議員님 계시니까? 없으시면 質疑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基礎議會 區議員인데 市·道議員 補償金 關係를 한 것은 基礎議員이 市·道議員 補償金으로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냐, 그런

것 아닙니까?

(○崔哲模議員 議席에서 - 예)

그것은 市道議員과 基礎議會議員의 日費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答辯을 누가, 柳成烈委員長님이 해주시겠습니까?

○行政委員會委員長 柳成烈 이 명칭은 行政委員會에서 심도있게 다뤘던 문제입니다. 왜 補償金을 支給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엄연히 區議員인데 基礎議員인데도 불구하고 市·道議員이라는 것을 명시했느냐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報償金 對策이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議員들의 報償對策을 세울 적에 범위를 높여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명칭이 市·道議員하는 것은 말하자면 區議員 市議員 道議員 이런식이 되어야 되는데, 地方議會 議員을 같이 동시에 해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區廳에서 서울시나 關係官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명칭을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說明을 우리가 듣고 또 行政委員會에서 심도있게 물어봤습니다만, 문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명칭상 市·道議員이 맞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行政委員會에서 다루면서 이것을 인정해서 市·道議員을 그대로 명시된대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炯九議員 議席에서 - 그것을,委員長, 地方議員으로 하면 안되요?)

地方議員으로 하면 안됩니다.

(○金炯九議員 議席에서 - 市議員이나 區議員 다 들어갈 수 있을...)

(○崔哲模議員 議席에서 - 그러면 명칭만 빌린다면 補償金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基礎議員이 市·道議員의 補償金에 준해서 탈려고 해서 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빼다가 해야지)

그래서 역시 崔哲模議員 말씀대로 우리 基礎議員이 基礎議員에 대한 그 범위내에서 받으면되지 구태여 우리가 市議員까지 높여서 받을 의무는 아무 것도 없는 과정이고, 또 받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말하자면 좀

치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의해 본 결과, 명칭이, 결과적으로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해서 사실 우리도 說明을 누누히 듣고 이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 자세하게 더 묻고 싶으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우리 擔當 總務課長님이 나오셔가지고 더 상세하게 答辯해 주십시오.

(○蘇正煥議員 議席에서 -委員長, 실제 補償金은 區議員에 준해서 받죠?)

(「아니죠」하는 이 있음)

區議員에 대해서 받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總務課長 趙學來 總務課長이 補充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行政委員會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관해서 논란을 많이 거듭했습니다. 여기에 혹시 착오가 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市郡區議員의 日費,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도 제기했었고 그다음에 또 설사 이것이 市·道議員이라고 했다면 이것은 부적절한 표현이 아니냐하는 그런 지적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問題에 관해서 처음부터 條例案을 議會에다 上程하기 전부터 이것에 관해서 서울시 當局과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외에도 저희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條例는 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지 여기에 세부적인 事項을 法的인 위임사항을 좀더 구체화 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條例制定의 취지가 아니겠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法 施行令 15條2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地方自治法 施行令 15條 2에 보게 되면 地方議會 議員의 職務上 傷害 등에 대한 補償金의 지급기준 및 절차, 그렇게 해가지고, 1項1號에 職務로 인한 死亡 직무상 傷害 疾病으로 인한 死亡의 경우 해가지고 이때 市道議員 日費의 2년분 상당액을 日費로 제상하게끔 法 施行令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問題에 관해서는 條例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法에서 명문화된 事項이기 때문에 이것은 條例上에 市道議員이라고 언급해

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이것은 더 明若觀火한 事項을 특별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行政委員會 柳成烈委員長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上級議員의 日費에 준해서 함으로써 議政活動에 열중하시는 議員들의 공상에 대해서 다소라도 더 많은 額數를 보상해주는 것이 議政活動을 좀 더 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도 부수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崔哲模議員 議席에서 - 문제가 그거예요. 基礎議員이 市·道議員의 日費를 받는다는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여기 이 높인다는 이 말이 잘못된거죠.)

崔議員님께서 그러시다면 첫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것으로써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法에 地方自治法 施行令 15條2에 지금 절차 기준에 관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事項을 한번 더 條例上에다 언급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하는 이 있음)

(「됐어요」하는 이 있음)

○議長 李敏衡 원 補償金 支給에 관한 條例案, 각호가 중복될 때 補償金이 높은 金額일 경우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市·道하면 基礎廣域을 한꺼번에 정했는데 答辯內容에 補償金을 높이기 위하여 市道議員을 규정한 것입니다 한 것은 사실 補償金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答辯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꼭 補償金을 높이기 위해서만 市·道議員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조금 文案이 보기가 안 좋다 그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審査報告書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 案을 가지고 討論에 임하실 議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討論이 없으시면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 城北區議會 議員傷害等 補償金 支給에 관한 條例(案)”을, 行政委員會에서 修正審査한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 城北區 地方別定職 公務員 人事管理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城北區廳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異議가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서울特別市城北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4. 서울特別市城北區'94第3次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城北區廳長 提出)

(15時21分)

○議長 李敏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城北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 城北區'94第3次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이상 2件의 議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本 案件을 審査한, 行政委員會의 審査結果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行政委員會 黃義揮議員님 나오셔서, 議事日程 第3項에서 第4項까지의, 審査結果를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揮議員 議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行政委員會 黃義揮議員입니다.

저희 委員會에서 審査한 案件中 財務局所管 2件을 일괄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 城北區區有財産管理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드리겠습니다.

行政財産의 용도폐지시 300㎡이하의 土地와 시가 1천만원이하의 기타 財産은 公有財産 審議會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行政財産의 처분시 그 節次를 생략 民願人의 便宜를 提供하고, 公有財産 매각시 분담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使用料, 賣却代金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등, 公有財産 買入, 貸付, 使用者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條例로써 行政委員會에서는 本 條例를 바람직한 改正으로 판단하였으며, 다만 300㎡이하의 土地면 土地價格이 수억원이 될 수도 있으므로 公有財産 審議會를 거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도 하였으나, 用途變更이나 폐지는 行政財産을

賣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고, 行政財産賣却은 區議會에서 審議를 거치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 城北區 '94第3次 區有財産 管理計劃 變更(案) 審査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地方財政法 第77條 및 서울特別市 城北區 區有財産 管理條例 第36條 1項의 規定에 의거 '94 第3次 區有財産 管理計劃에 대한 變更 計劃(案)을 수립 城北區 議會의 議決을 받아 시행키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管理計劃 變更(案)은 종암 再開發 區域내 土地로써 都市計劃法 第83條 規定에 의거 事業施行으로 기능이 상실된 公共施設 用地를 事業 인가자에게 무상 양도하는 대신 새로 설치되는 公共施設 用地는 行政廳에서 무상 양수하는 것으로 저희 委員會에서는 무상 양도에 대하여 많은 委員님들의 意見과 質疑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敦岩2-1再開發地域에 무상 양도의 선례가 있고 앞으로도 모든 再開發事業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議員 여러분!

저희 委員會에서 審査한 대로 原案可決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敏衡 行政委員會 黃義揮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부터 第4項까지의, 이상 2件의 案件에 대하여, 質疑와 討論時間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質疑가 있으신 議員님께서서는 質疑해주시기 바랍니다.

質疑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質疑가 없으시면, 討論時間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討論하실 議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討論이 없으시면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城北區 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城北區廳長이 提出한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異議가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城北區 '94第3次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을, 城北區廳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여러 議員님들 그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議事日程 論議가 끝났으므로 會議를 마치고도록 하겠습니다.

第36回 城北區議會 臨時會 閉會를 宣布합니다.

(15時27分 閉會)

○出席議員 41人

李 萬 載	柳 成 烈	安 敦 洙
李 鍊 垌	李 敏 衡	吳 案 泳
蘇 正 煥	李 三 田	崔 相 烈
崔 桂 洛	卜 定 安	權 赫 騏
金 正 圭	金 甲 濟	金 吉 泰
申 夫 浩	黃 義 揮	崔 哲 模
金 炯 九	趙 基 燦	黃 鎬 山
金 知 雲	金 承 泰	金 榮 植
金 德 守	羅 光 洙	徐 海 善
徐 化 錫	金 鍾 煥	李 明 煥
閔 應 說	申 宗 鉉	申 晉 玉
韓 春 子	洪 清 一	安 傑 瑢
俞 鎮 武	李 天 浩	鄭 喆 植
鄭 昌 萬	千 福 成	

○缺席議員 3人

金 光 鎬	朴 德 基	朴 演 洙
-------	-------	-------

○參席公務員

財 務 局 長	金 文 洙
總 務 課 長	趙 學 來
財 務 課 長	金 敏 九